

2024년 시종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농업 및 복지 대상 관리,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사각지대 해소를 군민 행복 실현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시종면
- 감사기간 : 2024. 5. 7. ~ 2024. 5. 10.(4일간)
- 대상기간 : 2022. 10. 1. ~ 2024. 5. 6.
- 감사자 : 기획감사과장 외 6인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지적사항 총괄

총건수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명)		비고
	시정	주의	합계	추징	회수	감액	훈계	주의	
16	6	10	1,801,190	721,450	1,079,740	-	-	1	

II 주요 지적사항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	지방자치단체 구매(유류)카드 관리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발급대장의 보관책임자 및 비밀번호 미변경 등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일직(재택)근무일 초과근무 부적정(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그리고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직근무자 및 재택근무자가 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확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업무 부적정(주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면제사유를 제외하고는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미징수하여 수수료 부과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지방공무원 복무(비상근무)규정 위반(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체휴무는 일(日)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가능하나 우천으로 봄철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5	법인카드 회계처리 및 관리 부적정(주의)	<p>「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나 결제일을 넘겨 입금조치 하는 등 카드이용내역 및 지출여부 등의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6	세입세출외현금 대장관리 소홀(주의)	<p>「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7	취득세(이륜자동차) 신고·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시정)	<p>「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총 〇건 〇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8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시정)	<p>「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담당자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〇〇〇주식회사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제출하여 총 〇건 〇원을 누락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9	장애인 사망자 복지카드 반환 안내 소홀(주의)	<p>「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아 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 반환통보서를 장애인(보호자)에게 송달하여 회수 후 폐기처분하여야 하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0	경로당 운영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p>「노인복지법」,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보조금 사용내역은 읍면에 상하반기 연 2회 정산하여야 하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11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p>「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권자는 마을별 정례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읍면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서류심사 등 확인 과정에 거쳤음에도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 결과를 미기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1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심사 소홀(주의)	<p>「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처리 시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면적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있으며 농지 관할 연접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취득인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에 해당되나 주말체험농으로 처리하였으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p>
13	준공검사자 지정 및 공사감독자 변경 지정 소홀(주의)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를 공문으로 지정·승인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공사기간 중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변경·승인을 하여야 하나 2022~2024년 총 85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공검사 ○건, 공사감독자 변경 ○건에 대해 지정·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4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p>「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설치공사 외 ○건에 대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석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15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정산 소홀 (시정)	<p>「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 정비공사 외 ○건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 제경비 과지급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총 ○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16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시정)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나, ○○○○○○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에 불일치함이 있음에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하여 총 ○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